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6. 12 선고 2023가단1571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변 론 종 결 2024. 5. 22.
판 결 선 고 2024. 6. 12.

주 문

-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2020. 5. 20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7,582,0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17,582,00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권혁재

변경된 청구원인

1. 상속지분 통의 특정

가. 피상속인 D는 2020. 4. 15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B(피고, 수익자)와 자녀들인 C(채무자), E이 있었습니다(갑 제10호증 기본증명서, 갑 제11호증 가족관계증명서, 갑 제12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).

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C은 모자관계이고, 위 C의 상속지분은 2/7입니다.

나. 위 D는 2020. 4. 15. 사망하였으나,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하였던 때는 '2020. 5. 20.'입니다(갑 제12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).

따라서 위 2020. 5. 20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.

다.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,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2/7 지분은 채무자인 소외 C이 상속 받았어야 함에도,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만이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(갑 제12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)

2. 채무자 C의 무자력

가. 법원행정처의 2023. 11. 22.자 회신에 의하면, C는 2019. 4. 1.부터 이 사건 사태행위 당시(2020. 5. 20.)를 거쳐 조회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없습니다(적극재산의 부재).

나. F의 2023. 11. 29.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의하면, C은 위 사태행위 당시(2020. 5. 20.)

① G에 금 5,807,000원(2015. 8. 31. 연체 등록, 2022. 8. 31. 연체 해제)

② H카드에 금 1,607,000원(2014. 10. 17 연체 등록, 2021. 10. 17 연체 해제)

[위 회답서 중 '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' 2쪽 참조]

[위 연체해제는 C이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, 연체 등록 후 7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. F에서는 연체 등록 후 7년이 경과하면 연체상태를 해제처리하고 있는 바, 위 내역을 살펴보면 연체 등록 후 정확히 7년이 경과한 때에 연체가 해제처리 되었습니다]

③ 원고에 5,152,869원(3,340,535원, 1,812,334원 ;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무임)

등 **합계 12,566,86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** 있었습니다(위 채무는 이자는 제외한 '원금'만에 대한 것으로,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더 클 것입니다).

다. 위와 같이 적극재산은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C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, 그로 인해 C은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.

3. 원상회복의 범위

가. 소장에서 밝혔듯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**사해행위 이전** 설정되었던 근저당권(근저당권자 I)이 **사해행위 이후** 말소되었

고,

또한 위 부동산은 **사해행위 이후** 소의 J, K에게 매각되었는 바, 원고는 가액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.

나. 사실심변론종결시와 가까운 2024. 4.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억 500만원 원 입니다(갑 제13호증 L 부동산 시세조회결과 참조)

I의 2023. 11. 8.자 회선에 의하면, 사해행위 당시(2020. 5. 20.)와 가까운 2020. 5. 18.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162,577,042원(111,309,244원, 51,267,798원)입니다.

따라서 위 부동산 가액(605,000,000원)에서 위 피담보채무액(162,577,042원)을 공제한 442,422,958원 중 C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금 126,406,559원(442,422,958원 × 2/7)이 위 부동산 중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.

다. 원고는 위 책임계산(126,406,559원)과 원고의 퍼브전채권액(17,582,001원, 갑 4, 8 각 채권계산서) 중 더 적은 금액인 17,582,001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손해행위를 취소하고, 가액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서울특별시 중랑구 [] [] [] 아파트 []동

[도로명 주소] 서울특별시 중랑구 []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7층 아파트

1층 739.68㎡, 2층 내지 26층 각 738.12㎡, 27층 341.10㎡, 지하1층 712.56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서울특별시 중랑구 [] 대 36494.3㎡

2. 서울특별시 중랑구 [] 대 119.2㎡

3. 서울특별시 중랑구 [] 대 31.8㎡

4. 서울특별시 중랑구 [] 대 20.4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층 []호 철근콘크리트조 59.76㎡

(대지권의 표시)

1, 2, 3, 4 소유권대지권 41222.9분의 22.25 끝.

